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 총평

- 아모리이그잼 학원 이명호 교수 -

■ 총평 : 최근의 관세법 문제는 지문의 길이가 꽤 깁니다. 법조문 각 항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집중력 잃지 않고 읽을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올해 문제도 역시 긴 문장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문제풀이와 동형모의고사에서 모두 유사하게 경험한 문제들이어서 확신을 갖고 답을 체크한 문제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만, 거의 모든 문제가 단어 하나를 바꾸거나, 또는 문장의 끝 부분을 살짝 바꾼 문제들이어서 문제 풀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과목 문제는 어느 부분이 '바뀌어' 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토대로 관세법 문제의 특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나? ('가'책형 기준)

번호	주제	근거	비고
1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법 제97조	숫자
2	징역과 벌금의 병과	법 제275조	포함 여부
3	용어의 뜻 (외국물품/내국물품)	법 제2조 등	말 바꾸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납세신고/납세고지)	법 제10조, 영 제2조	말 바꾸기
5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획재정부장관/기획재정부차관)	영 제245조의2	말 바꾸기
6	수출·수입·반송 신고 필수신고 사항	법 제241조, 영 제246조	포함 여부
7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 절차 (제외한다/한정한다)	법 제135조	말 바꾸기
8	특허보세구역 (세관장의 허가/세관장에게 신고)	법 제183조 등	말 바꾸기
9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절차	법 제86조, 영 제106조	숫자
10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세관장/관세청장, 말일까지/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262조 등	말 바꾸기
11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처분을 한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60일/30일)	법 제119조 등	숫자, 말 바꾸기
12	통관의 예외적용 (징수한다/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 제240조	말 바꾸기

13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중 부과 사유	법 제42조, 영 제39조	포함 여부
14	가격신고 (세관장/관세청장, 대통령령/기획재정부령)	법 제27조, 영 제15조	말 바꾸기, 포함 여부
15	지식재산권 보호 (기획재정부령/대통령령)	법 제235조	말 바꾸기
16	세액의 보정 (15일 이내/다음날까지)	법 제38조의2	말 바꾸기
17	과세전 통지 생략 사유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관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	법 제118조	말 바꾸기
18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 (승인/확인, 세관장/관세청장, 확인/허가)	법 제157조의2	말 바꾸기
19	통관의 제한 (기획재정부령/대통령령)	법 제238조	말 바꾸기
20	일반특혜관세 등 (편익관세/일반특혜관세)	법 제76조	말 바꾸기

**1. 법률과 시행령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20문항 중 14문항은 법률에서만 출제되었습니다.
- 5문항은 법률과 시행령이 섞여서 출제되었는데, 이런 경우 시행령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 1문항은 시행령에서 출제되었습니다.
- 시행규칙이 단 한 문장 출제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거의 출제되지 않은 점이 이번 시험의 특징입니다.

**2. 대부분이 말(단어 또는 어구) 바꾸기 문제였습니다.**

- 5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 바꾸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차관을 장관으로,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대통령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바꾸는 등의 문제 형태였습니다.
- 법령을 볼 때, 어떤 부분의 ‘말 바꾸기’가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3. 숫자가 핵심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20문항 중 3문항은 ‘숫자’가 핵심인 문제였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숫자를 다루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숫자’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4. 포함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20문항 중 4문항은 ‘포함 여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번 문제는 어떤 범죄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6번 문제는 특정 사항이 ‘필수 신고 사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 법령에서 ‘사유’, ‘경우’ 또는 ‘대상’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명확히 외워둬야 합니다.

■ 문제 해설

문 1.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         |          |
|---------|----------|
| ㉠       | ㉡        |
| ① 300만원 | 100분의 20 |
| ② 500만원 | 100분의 30 |
| ③ 300만원 | 100분의 30 |
| ④ 500만원 | 100분의 20 |

1. 정답 ④

이 문제는 재수출 면세(법 제97조)를 적용받은 물품은 재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의 크기와 그 상한금액을 묻고 있다. 즉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에 대한 문제이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97조 제1항).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세관장은 제1항(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문 2.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밀수출입죄
- ②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 ③ 관세포탈죄
- ④ 밀수품의 취득죄

2. 정답 ②

관세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의 전문은 이렇다.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 274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지 않는 범죄는 관세법 제268조의2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하나 뿐이다.

구분	관 세 법					
	제264조의9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위반죄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등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미수범 등	밀수품 취득죄 등
징역과 벌금의 병과	가능	×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문 3.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 ②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③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 ④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3. 정답 ④**

관세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는 ‘내국물품’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라.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즉,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다.

-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법 제3조 제1항). 이를 ‘관세징수의 우선’이라 한다. 한편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법 제3조 제2항).
- ②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법 제5조 제2항). 이를 ‘소급과세의 금지’라 한다.

③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법 제8조 제1항).

**문 4.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정답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 제10조).

다만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영 제2조 제6항). 세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영 제2조 제7항). ‘납세신고’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하는 것이다(법 제38조 제1항). ‘세관장’이 하는 것이 납세신고 아니라 ‘납세고지’이다(법 제39조 제3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li><li>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li><li>3. 파산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li></ol> |
|--|

①, ③ 법 제10조, ② 영 제2조.

**문 5. 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무역원활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③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④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정답 ③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영 제245조의2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영 제245조의2 제3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영 제245조의2 제3항).

- |  |
|--|
|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 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
| 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규칙 제77조의4).

② 무역원활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영 제245조의3 제3항).

④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영 제245조의2 제6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영 제245조의3 제4항).

문 6.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 ② 물품의 장치장소
- ③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④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정답 ①**

이 문제는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할 때의 **필수 신고 사항**에 관한 문제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영 제246조 제1항).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문 7.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7. 정답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135조 제2항).

① 법 제134조 제1항, ③ 법 제136조 제2항, ④ 법 제137조 제1항.

#### 문 8.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전시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 ④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 8. 정답 ④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법 제183조 제1항).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법 제183조 제2항).

① 법 제174조 제1항, ② 법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 ③ 법 제185조 제2항.

#### 문 9.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 9. 정답 ②

이 문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법 제86조 및 영 제106조)의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①~④의 숫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영제106조 제2항).

① 영 제106조 제4항, ③ 법 제87조 제3항, ④ 법 제86조 제7항.

**문 10.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정답 ①**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이란 법 제262조부터 시작되는 법 제10장의 제목이다.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262조,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②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③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64조의4 제1항,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64조의6 제1항,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법 제264조의6 제2항).

**문 11.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 11. 정답 ③

③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21조 제1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법 제132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 제122조 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법 제132조 제4항). 즉,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21조 제1항)"는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28조 제2항).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바꿔야 한다(법 제128조 제2항).

### 문 12.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 12. 정답 ④

이 문제는 '통관의 예외 적용'과 '보세구역'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을 하나의 문제에 모아 놓았다. 여기에서 '통관의 예외 적용'이란 관세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과 관세법 제240조의 '수출입의 의제'를 말한다.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수입의 의제'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제24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제240조 제1항).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법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법 제161조 제3항).

1. 법 제161조 제2항("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② 법 제160조 제2항(장치물품의 폐기), ③ 법 제240조 제2항(수출·반송의 의제).

문 13.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 ②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 ③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 ④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13. 정답 ③

이 문제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가중 부과'에 관한 문제이다.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법 제42조 제2항).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39조 제4항).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행위

③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가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문 14.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4. 정답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항).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3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영 제15조 제2항).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영 제1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영 제15조 제3항). 여기서 '영 제15조 제2항 제1호'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5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5.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②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5. 정답 ③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35조 제7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법 제235조 제1항).

-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법 제235조 제2항).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다음의 규정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문장이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235조 제3항).

- 1. 수출입신고된 물품
-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 5. 법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문 16. 「관세법」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정답 ③

- ③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4항).
- ① 법 제38조의2 제1항, ② 법 제38조의2 제2항, ④ 법 제38조의2 제5항.

문 17.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 ②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③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 ④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17. 정답 ③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문장 전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의 정의이다. 이때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
|---|
|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
|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 4.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 5. 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아니라,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다. 관세 추징은 '징수'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부과'와 관련된 개념이다.

**문 18.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정답 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57조의2 전문).

②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51조 제1항, 물품의 하역 등). 이것은 '차량' 규정이고, 외국무역선(기) 규정은 이렇다.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40조 제2항).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법 제159조 제1항). 이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59조 제2항).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법 제159조 제3항).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61조 제1항).

**문 19.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③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19. 정답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38조 제1항).

- |  |
|--|
|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br>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
|--|

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   |
|---|
|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br>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br>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문 20.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④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 정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1항).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2항).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97조 제1항).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06조의2 제1항).

- |  |
|--|
|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

④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21조 제1항).